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장 제출 관련 취재 참고 자료

- 전주지검은 2025. 4. 24. 특가법위반(뇌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을 전직 기소했습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5. 4. 30. 위 사건 수사의 위법성에 관해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포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 고발 주요 내용에 대해 언론인들의 취재 참고를 위해 설명드립니다.

□ 피고발인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
- 박영진 전주지검장
- 김현우 검사
- 박노산 변호사(전 전주지검 검사)
- 그 외 성명불상 전주지검 검사들

□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번 고발에 나선 이유

-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고 나아가 기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국민들께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함
- 이번 고발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피고발인들이 사건에 관하여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 정치적 행태를 한 것임. 이는 단지 고발인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며, 나라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며, 전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
- 전직 대통령으로서 고발인은 i)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변론을 통하여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은 물론, ii) 이 사건 고발 및 고발 관련 추가적인 의견 개진을 통하여 공정한 검찰권이 정립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 피고발인들의 이번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

1. 이 사건 수사의 배경과 동기를 추론해 볼 수 있는 요소

① 광상도의 의혹제기와 이창수의 전주지검장 보임

- 이 사건 수사는 최초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던 광상도의 의혹 제기에서 시작되었고, 2021. 12. 6. 한 시민단체가 이 사건으로 고발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하였음
- 그럼에도 고발인이 현직 대통령에 재직 중인 때는 물론이고, 대통령직에서 퇴임하고 후임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개시한 이후에도 검찰의 고발인의 뇌물죄에 관한 수사에 의미있는 진전이 없었음
- 2023. 9. 4. 피고발인 이창수가 전주지검장으로 임명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돌연 급물살을 타게 되었음. 이창수는 광상도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민정수석 재직시 휘하의 검사 파견관으로 근무한 바 있고, 광상도와 성균관대학교 법대 동문의 관계에 있음
- 피고발인 이창수의 전주지검장 보임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사태(2023. 7. 6.), 채 해병 사망 사건(2023. 7. 18.), 부안 잼버리 파행 사태(2023. 8. 1. ~ 8. 12.) 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음. 전직 대통령 수사를 통한 여론의 관심 돌리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임
- 피고발인 이창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검찰총장의 입이라는 별칭을 지닌 대검 대변인으로 재직하였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임명되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및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수사를 총괄했음
- 이후 피고발인 이창수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보되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사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했는데, 전직 대통령인 고발인 사건은 다양한 강제수사를 통하여 별건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강도 높은 수사를 한 반면, 현직 대통령 부인 관련 수사를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임.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를 한 것은 피고발인 이창수의 이중잣대와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임

② 같짓자 수사방향과 이를 깨어 맞추기 위한 뒤늦은 피의자 입건

- 최초 이 사건 수사방향은 제3자 뇌물이었는데, 어느 틈엔가 검찰의 적용죄명은 단순 수뢰로 변경됨. 제3자 뇌물의 경우 형법 제130조가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고발인과 이상직간 부정한 청탁의 실체를 도저히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임
- 단순 수뢰의 경우에도 피고발인들은 처음에는 이른바 경제공동체론을 입론했음. 고발인의 딸 부부가 경제적으로 무능하여 문제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고발인 부부가 딸 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2018년 사위가 직장을 그만 두고 실직자가 되자,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해 주고 그 대가로 사위를 취업시켜 고발인이 딸 부부에 대한 금전적 지원액 상당의 부담을 면하는 이익을 취했다는 것임. 졸렬하고 근거없는 악의적 상상임
- 2013년 딸 부부가 결혼할 당시 사위는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었고, 사위가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소득이 없는 때에도 고발인이 아니라 사위의 본가가 꾸준히 사위와 딸을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었음. 피고발인들도 이를 알았는지 이번 기소에서 사위 부부가 무능하여 고발인과 경제적 공동체라는 입론은 빼고, 대신 고발인과 딸·사위가 공모하여 함께 뇌물을 수수했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함
- 이번 전주지검 보도자료에 의하면, 사위와 딸의 형사소송법적 지위가 피의자로 바뀐 것이 2025. 2월과 4월임. 그 전에는 참고인의 지위에 있었던 것인데, 이는 이렇게 급변한 수사방향에 따라 급조된 것으로 보임
- 피고발인들의 수사방향의 혼선은 이뿐만이 아님. 피고발인들은 애초에는 사위 취업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대가라고 언론에 유출하였는데, 이번 전주지검 보도자료에서는 그러한 입론은 사라지고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하나의 방론으로만 변경되어 언급되고 있음.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관련성을 제시하며 이상직이 공단의 운영 및 2020. 4.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면직 등에 대통령의 편의제공이 필요했다고 하나, 2018. 2. 임명 당시 관점에서 이는 비상식적인 주장임
- 실제 중진공 이사장직 인선은 2017. 12.경 시작되었고, 2018. 1.경 이상직 등 후보자가 압축되었고,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이 2018. 2.이었는데, 사위는 2017. 12.은 물론이고 2018. 1.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음. 따라서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있어 사위 취업은 전혀 고려요인이 될 수 없었음

③ 핵심적인 증거의 부재와 전격 기소

- 이와 같이 수사의 핵심 기초와 방향이 바뀌고 이에 따라 딸과 사위가 종래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형사소송법적 지위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피의자로 입건한 딸과 사위의 변호를 청취하여 그 진술을 검토하고 증거관계와 비교·분석해야 하는데, 피고발인들은 이 절차를 아예 통째로 생략해 버렸음
- 이번 공소제기의 핵심 뼈대가 이상직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관철에 있어서 대통령인 고발인이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사위와 딸이 고발인과 공모하여 그러한 이상직으로부터 취업의 기회를 얻어 급여와 주거비 등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이 핵심 뼈대의 관련자들인 이상직, 문다혜, 서창호 누구도 검찰에 진술한 사람이 없음
- 나아가 고발인이 상세한 변호를 담은 서면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발인들은 이마저도 받아보지 않고 전격적으로 기소를 감행함. 이 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한 것인지 의문임

2. 이 사건 수사의 문제점

이상의 피고발인들의 행태를 요약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결론을 정해 둔 수사과 기소라는 점임. 피고발인들에게 이 사건에 관한 증거는 필요 없었음. 이미 유죄요, 정해진 기소의 길을 피고발인들은 간 것일 뿐임
- 둘째, 수사 및 기소라는 절차에서 마땅히 증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오도된 신념과 그릇된 확신이 대신 들어서 있다는 점임. 결론을 정해 둔 수사과 기소이니 증거가 굳이 필요할 까닭이 없을 것임
- 셋째, 이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행태는 정치화된 검찰권 행사, 오염된 검찰권 행사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임.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은 이들이 정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기 때문임. 검사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분을 행사한다면,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엄정한 수사 촉구

- 이 사건은 절차로나 그 내용으로나 정치화된 검찰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임. 절차적, 내용적 불법의 단죄를 위하여 공수처가 엄히 수사에 입해 주기를 기대하며, 고발인으로서 수사에 적극 협력할 예정임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검찰 스스로 공익의 대변자로 자처하면서도 검사들이 실제적 진실과 적법절차에 따라 정의와 양심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 오염되어 이 사건 수사를 무한정 확대하여 별건 수사를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 수사과정에서 수사의 내용을 수시로 언론에 유출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고, 수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의 단호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함

[별첨] 피고발인들의 주요 범죄 사실

- ①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에 의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21. 12. 한 시민단체는 ‘대통령이 대통령 임명직위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직위에 이상직을 임명하는 대가로 이상직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사위를 태국 소재 타이이스타셋에 특혜 채용되게 하여 월급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하였다’ 고 고발하여 제3자 뇌물공여죄로 수사가 시작되었음
 - 2023. 9. 이창수가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후, 그간 약 1년9개월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제3자뇌물공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 을 확인하지 못하자 전방위적인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를 위해 전주지검 형사3부 검사 대부분을 투입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측 사람들에 대해 광범위한 강제수사를 진행하였고, 2024. 5.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박영진 또한 이창수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별건수사를 진행하였음
 - 전주지검에서 자행한 별건수사로 ㉠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에 대한 별건수사(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및 대통령기록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홍종학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조현옥을 ‘직권남용죄’ 로 기소)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과 아내에 대한 별건수사(압수수색을 통해 광범위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 딸 주거지 압수수색),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 전인 2015.경 사위의 취업에 대한 별건수사, ㉣ 광상도 전의원에 의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한 별건 수사
 - 검찰이 정치적 동기에서 특정인을 형사처벌 할 목적으로 본건 수사를 빙자하여 범죄혐의가 나올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별건 수사는 위법한 수사로 그 대상인 국민의 사생활의 평온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법 제125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함
- ② 위법한 수사에 의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검찰의 수사작용은 국가 공권력 중 가장 강력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1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한 인권보호수사규칙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한 수사가 진행되었음

- 본건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부실한 수사에 기초한 기소
 - 전주지검은 전직 대통령인 본건 고발인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함이 없이 윤석열 탄핵과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정치적/전략적 목적에 의한 기소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 전격적인 기소를 함
 - 이와같은 기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전명한 헌법 제27조에 기초하여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발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방해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24. 1. 16. 참고인 서00 주거지 압수수색관련 직권남용
 - 피고발인 김현우는 서00의 변호인이 참여를 위해 현장으로 가고 있으니 영장집행을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압수수색을 집행하여 서00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서00 변호인이 가지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집행 참여권 행사를 방해함
 - 피고발인 김현우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전자정보를 복제할 저장매체를 준비해 오지도 않은채 『㉠ 서00의 디지털 기기 자체를 압수, ㉡ 서00 모친이 2017년경까지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임을 밝혔음에도 전원이 꺼져 있어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서00 모친 사용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 ㉢ 서00 아들 서00이 수업에 사용하는 테블릿 자체』를 압수하여,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 비례성원칙에 위반한 강제수사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서00와 그 모친 및 아들의 사생활 평온의 자유와 재산권행사를 방해함
-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참고인 양00에 대한 출국정지
 - 피고발인 성명불상 전주지검 검사는 2024. 1. 26. 당시 출국정지가 되어 있던 참고인 양00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집행하며 ‘집행 후 1회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출국정지 해제 요청을 할 것’ 이라고 이야기하였다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00가 휴대폰 비밀번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고압적 태도와 함께 출국정지를 유지하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라고 강압하여, 적법절차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직권남용 행위로 양00가 가지는 출국의 자유행사를 방해함
- ③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비밀누설과 위 행위에 의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실시간 중계방송과 같은 이 사건 수사관련 언론보도
 - 검찰은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며 사건 관계자를 흠집낼 만한 사항을 언론에 흘려 일반 대중의 반감을 불러일으킨 다음 이를 동력으로 수사를 강화, 확대하는 수법을 자행하여 왔고, 이

-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서도 본건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들 범죄사실 대부분을 언론보도에 기초하여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언론플레이를 하였음
- 단독 언론보도의 내용과 그 출처 추정되는 피의사실공표행위 및 공무상비밀누설행위
 - 이 사건 관련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극심하여 관련 언론보도가 수천 개에 이르는데 그 중 특정 언론사의 단독보도만 추리면 대략 45개 보도에 이르고, 단독보도 내용 중 이 사건 수사의 피의사실 자체에 관하여 단독보도를 하도록 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행위임
 - 45개의 단독보도는 “공보의 방식이 아닌” 전주지검 수사팀이 특정 언론사에게 은밀히 알려주어 보도된 것으로 대법원 판례와 「형사사건의공보에관한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임
 - 이 사건 수사의 피의사실 자체 및 수사 상황과 수사 내용을 보도하도록 한 피고발인들의 피의사실공표행위로 본건 고발인 일가 등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이는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함
- ④ 피고발인 박노산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위 행위에 의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발인 박노산의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행위 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
 - 서00은 당시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도, 출석하여 진술할 의무도 없었음. 이에 피고발인 박노산은 서00의 출석과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2024. 3. 25. 성명불상 수사관 1명을 대동하여 사전 약속없이 서00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서00의 가족을 압박하였고, 전주지검 일반전화 및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서00의 모친에게 총19차례 전화를 하며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압박하였음. 이와같은 피고발인 박노산의 행위는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는 스토킹범죄임
 - 스토킹행위에 의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피고발인 박노산의 위와같은 스토킹범죄 행위는 참고인 서00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진술을 강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서00 가족이 가지는 사생활의 평온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형법 제129조의 죄를 범한 것임